이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 www.cd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5. 05. 10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신동호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cyberdhs@cd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행·재정적 지원 및 유치활동 등의 측면에서 공주시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제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데 있음

요 약

- 본 연구는 공주시의 원활한 기업유치방안을 모색코자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거침
  - 첫째, 대내외적 기업유치 여건변화로 ①국내외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투자추이, ②수도권 규제완화, ③혁신·기업도시 건설 등을 살펴봄
  - 둘째, 전국 광역 지자체 및 공주시의 기업유치 제도와 관련 인센티브, 그리고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기업유치 관련 주요기관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차원에서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살펴봄
  - 끝으로, 공주시의 기업유치 여건에 대한 SWOT분석을 실시함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공주시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제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주시 기업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유치전략 수립 및 기업유치 프로세스 확립이 우선되어야 함
  - 둘째,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차원에서 ①기업유치 홍보대사 위촉·운영, ②국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및 추진체계 확립, ③투자유치 자문관 채용, ④투자유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셋째, 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공주시 기업유치 기금조성과 기존 일반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전환하여 인센티브 지원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끝으로 기업유치 활동차원에서 ①공주시 출향기업 파악 및 본사방문 투자상담 정례화, ②투자유치 팸투어 프로그램 마련, ③Target기업의 투자의향 및 인센티브 수요조사 실시, ④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해야함

CONTENTS

〈 요 약 〉
1. 대내외적 기업유치 여건변화
2. 전국 및 충남도 기업유치 정책현황
3. 지자체 기업유치 사례
4. 기업유치 유관기관 현황
5. 공주시 기업유치 실태 및 SWOT분석
6. 공주시 기업유치 방안

CDI 충남발전연구원

01 대내외적 기업유치 여건변화

1 세계 및 국내경기 여건변화

◉ 세계경기 회복지연에 따른 국내 경기의 동조화 현상(coupling) 뚜렷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시장 부실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일랜드, 동유럽, 두바이 등을 시작으로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 유럽의 재정위기로까지 확산된 바 있음
- 아울러 최근의 중국발 경제위기 전망까지 세계경기는 침체상태에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마저 대두됨
- 다만, 세계경제의 성장률 추세를 보면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로부터 다소 회복된 조짐이나 2000년대 중반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LG Business Insight, 2014)
-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를 야기한 구조적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 및 신흥국의 내수부문 성장한계 등이 세계경기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지속 작용하기 때문임
- 관련하여 우리 경제는 수출중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세계경기에 민감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함

- 구체적으로 세계경기의 침체 또는 회복지연은 수출둔화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내투자 및 소비, 그리고 고용 등의 실물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러한 영향 탓에 최근 국내제조업 부문의 기업경기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침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2010년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기업경기는 2012년 하반기를 최저점으로 최근 소폭 반등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경기회복이 더딘 상태임

- 실제로 생산 및 가동률 하락은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최근의 설비투자실적이 2010년 초반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국내 경기침체는 기업의 투자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임

〈그림1〉 기업경기실사지수

자료 : http://kosis.kr/

2 정책환경 변화

◉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된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흐름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이 중 공장입지규제 및 규모완화, 첨단업종의 신·증설 제한완화 및 입지허용 범위 확대 등 일련의 조치는 지방의 기업유치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함

- 실제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감소하는 것 외에도 지방의 신규창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1)]

〈표 1〉 수도권 규제완화 흐름

일 자	주요 내용
2008. 7. 21	• "5+2 광역경제권 정책" 발표, 수도권과 지방에 동등한 기업 입지제도와 인센티브 적용
2008. 9. 25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역발전특별법 입법 예고
2008. 10. 30	• "국토이용효율화방안"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발표,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산증설 허용, 서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2009. 3. 27	• 수도권의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산업단지 활성화 등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도입
2009. 5. 8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2020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141㎢ 해제
2009. 9. 8	•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는 수도권 계획관리법안 발의
2011. 1. 18	• "수도권 과밀억제" 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 관리" 로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무회의 통과
2011. 1. 24	• 대기업 총수 간담회에서 "기업의 R&D센터 서울·수도권에 설립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시
2011. 1. 27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규제 및 규모제한 완화 발표 – 공장면적, 폐수발생량에 따른 입지구제 완화 –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의 공장증설 제한 규모 완화
2011. 3. 2	• 첨단업종을 규정한 관련 법 개정 – 수도권 내 공장 산증설 제한 완화(156개 업종→277개 업종)
2011. 8. 12	• 수도권 입지허용 첨단업종 범위를 확대, 조정 – 첨단업종 지정 99개 업종과 158개 품목을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조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자료 :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2013).

◉ 관련하여 충남의 경우, 2008년 이후 기업유치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08년 충남에서 유치한 기업 수는 총 855개소였으나, '09년 817개소, '10년 683개소, '11년 729개소, '12년 596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실정임

- 충남으로 유치된 기업 중 수도권 이전기업은 2008년 292개소(34.1%)에서 2012년(11.6%) 69개소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임

〈표 2〉 충남의 기업유치 현황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월말)
업체수	855	817	683	729	596	517
(수도권 이전기업)	292	282	200	92	69	29
투자금액(억원)	147,119	21,589	29,581	52,708	28,367	13,786
고용인원(명)	46,250	20,294	18,883	23,362	12,172	9,884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

1)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 감소는 세계 및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여건 악화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도시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임

- 정부는 2005년 8월 시범도시로 태안, 충주, 무주, 무안, 영암·해남, 원주 등 6곳을 선정함

- 이 중 무안은 산업교역형, 원주와 충주는 지식기반형, 무주·태안·영암·해남은 관광레저형으로 개발 중임

◉ 한편,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최적의 혁신여건과 양질의 생활환경을 구비한 미래형 도시임

- 정부는 2005년 혁신도시로 진천·음성, 전주·완주, 나주, 원주, 김천, 대구, 울산, 부산, 진주, 서귀포 등 10곳을 선정한 바 있음

〈그림2〉 전국 혁신·기업도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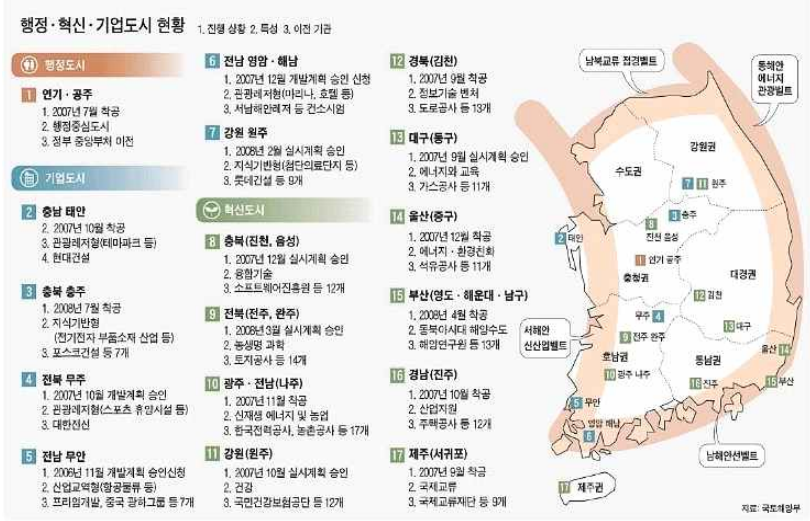

자료 : https://www.google.co.kr/

◉ 이들 혁신·기업도시가 '14~'15년 중으로 완공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기업유치 여건은 비약적으로 양호해져 기업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

- 다만, 이외 지역은 최근의 기업투자여건을 감안할 때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전국 및 충남도 기업유치 정책현황

02

1 광역 지자체별 기업유치제도 및 인센티브

◉ 국내 광역지자체는 국내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개별 지자체들은 동 조례에 의거, 국내기업유치를 위해 보조금지원, 조세감면, 고용 및 교육·훈련지원, 금융지원 등 한 다양한 지원을 모색

〈표 3〉 광역지자체별 국내기업 유치지원제도 현황*

구 분	주요내용	근거
부산	지방세감면, 산업입지지원, 설비투자 보조금, 생산자서비스업지원, 금융지원, 행정지원 등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대구	시설용지, 시설비보조, 금융지원, 특별지원 등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인천	고용보조, 고용장려, 교육훈련, 임차료, 시설보조, 행정지원, 특별지원 등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 조례
광주	지방세감면, 입지보조, 설비투자보조, 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 컨설팅보조, 금융지원, 특별지원 등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대전	본사이전보조, 입지보조, 설비투자보조, 임대금보조, 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 기술이전보조 등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울산	이전보조, 외투기업 지원준용, 특별지원 등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세종	입지보조, 설비투자보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	이전보조, 세제감면, 용지지원, 금융지원 등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충북	이전보조, 시설투자보조, 운영비지원, 특별지원 등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충남	입지보조, 투자보조, 조세감면, 고용지원, 금융지원 등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북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기반시설, 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 등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남	토지매입비, 공유재산 임대, 이전보조 등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경북	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 입지보조, 이전보조 등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경남	임대용지, 입지보조, 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 시설보조 등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입지보조, 설비투자보조, 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수록되지 않은 서울, 경기는 제외함.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및 충남도 내부자료.

◉ 개별 광역지자체들의 기업유치 지원내용은 대동소이하나, 운용방식은 지자체의 기업유치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기업유치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의거, 광역 지자체별 실링(ceiling)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기업유치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입지 및 설비투자지원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여타 부문의 지원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 반대로 기업유치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여타 부문의 지원여력이 그 만큼 높아질 개연성이 큼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상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기업은 크게 4개로 분류됨

- 지원대상기업 중 수도권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이전지원 기준은 동일하며, 나머지 지원대상기업은 신·증설 기업임

〈표 4〉 수도권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이전지원 기준*

지역 분류	지원 유형	지원범위			지원금액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10%이내	입지투자금액의 30%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65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6%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8%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9%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1%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2%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4%이내)	
수도권 인접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9%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45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4%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6%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6%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8%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9%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1%이내)	
지원 우대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20%이내	입지투자금액의 40%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5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9%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1%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7%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22%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24%이내)	

* 수도권 기업이전 : 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
국내복귀기업 이전 : 국내복귀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것.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이전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호.

〈표 5〉 신·증설 기업 지원기준*

지역 분류	지원범위			지원금액
	대기업(신설)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설비 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2%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65까지
수도권 인접 지역	설비 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9%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45까지
지원 우대 지역	설비 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22%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5까지

* 신·증설 기업 : 비수도권에 신설 및 증설을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호.

◉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국내 광역지자체들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관련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표 6〉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현황

구 분	주요내용	시행 지자체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16개 광역시도 모두 시행
입지지원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임대	14개 광역시도 시행 (강원, 울산 미시행)
입지보조금	분양가 보조금, 용지매입비 보조금	14개 광역시도 시행 (경기, 대전 미시행)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16개 광역시도 모두 시행
현금지원	토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자재구입비, 인프라 설치비, 전기통신비 등	10개 광역시도 시행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미시행)
융자지원	투자유치 진흥기금(부지매입비의 50%)	경남만 시행(15개 지자체 미시행)
컨설팅비용지원	컨설팅 및 타당성 조사비용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전남 시행 (10개 지자체 미시행)
시설보조금	신증설시 설비금액, 기반시설 비용	9개 광역시도 시행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충북, 전북, 경북 미시행)
국내진출 외국기업 지원	이전소요비용	대구, 광주 시행(14개 지자체 미시행)
특별지원	외투금액의 50%내 지원	대전만 시행(15개 지자체 미시행)
생활환경개선	기반시설, 운영비, 토지매입비	12개 광역시도 시행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미시행)
유공자포상	특별승진, 금전포상	서울, 인천, 울산 시행(13개 지자체 미시행)

자료 : http://www.investkorea.org

◉ 16개 광역시도별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는 위의 〈표 6〉과 같음

- 16개 광역시도는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원조건과 일부 지원내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한 실정임

2 충남도 기업유치제도 및 인센티브

◉ 충남도는 국내기업 유치 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과 '충청남도국내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에 의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

- 우리도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근거로 충남도내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충남도의 국내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운용방식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원인센티브는 ①보조금 지원(입지 및 투자), ②자금융자, ③조세감면, ④인력지원, ⑤관세감면으로 국한됨

- 둘째, 보조금 지원대상기업은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증설기업임(신·증설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대상기업의 지원내용은 동일하며, 신·증설의 경우, 투자보조만 이루어짐)

- 셋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5개 시군을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지원우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비율을 차등화함(또한 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을 차등화함으로써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지원비율을 높게 설정)

- 넷째, 국내기업유치에 투입되는 재원은 실링제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타지역에 비해 기업유치여건이 우수한 우리도는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비중이 높아 나머지 인센티브(자금융자, 조세 및 관세감면, 인력지원)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충남도 투자유치 담당자 문의결과)

- 끝으로, 국내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대동소이하나, 입지 및 투자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지원여력은 낮은 수준임

〈표 7〉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 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역분류	지원비율 (국:지)	지원유형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인접지역 (천안,아산,당진)	45:55	입지	-	-	입지금액의 9% 이내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일반지역 (서산,홍성,보령,공주,논산,계룡,태안)	65:35	입지	-	입지금액의 10% 이내	입지금액의 30% 이내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 이내
지원우대지역 (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태안 기업도시)	75:25	입지	-	입지금액의 20% 이내	입지금액의 40% 이내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7%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2% 이내

자료 : http://www.chungnam.net/.

〈표 8〉 신·증설 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역분류	지원비율 (국:지)	지원유형	신·증설 기업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인접지역 (천안,아산,당진)	45:55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일반지역 (서산,홍성,보령,공주,논산,계룡,태안)	65:35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 이내
지원우대지역 (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태안 기업도시)	75:25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7%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2% 이내

자료 : http://www.chungnam.net/.

〈표 9〉 국내유치기업 대상 인센티브(입지 및 투자보조 제외)

구분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증설 기업
조세감면	법인세 : 6년(100%), 이후 3년(50%) 취등록세 : 면제 재산세 : 5년(100%), 이후 3년(50%) 취득세 : 면제	법인세 : 5년(100%), 이후 2년(50%) 소득세 : 5년(100%), 이후 2년(50%) 취득세 : 면제	취득세 · 재산세 : 면제	취득세 · 재산세 : 면제
관세감면	-	(중소) 선정일로부터 자본재 5년	-	-
인력지원	-	고용 1명당 최대 1080만원(1년간) 생산관리자 (E-7) 지원 비전문취업(E-9) 지원	-	-
자금융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등(도자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최대70억원) R&D지원 : 단일 과제별 최고 1.5억원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등(도자체)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5).

◉ 한편, 충남도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시 '충청남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에 의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

- 동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국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충남도의 외국인 투자지원 인센티브는 입지 및 시설보조,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신증설 투자보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 현금보조 등으로 구분됨

- 충남도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유형은 여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대동소이한 특징을 보이는 바,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0〉 임대료감면

감면요건	감면규모		기간
A.개별형외투지역	100%		50년
B.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분야 최소외투금액100만$ 이상	단지형외투지역	100%	
	일반산업단지	50%	
C.일반제조업으로서 최소외투금액 5백만$ 이상	단지형외투지역	75%	
	일반산업단지	50%	

자료 : http://www.investkorea.org/.

〈표 11〉 신증설 투자보조

지원요건	구분	지원한도
외국인 투자비중이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신규투자	외국인투자금액의 50%
	증설투자	외국인투자금액의 50% 외국인투자금액+이익잉여금 25% 범위내

자료 : http://www.investkorea.org/.

〈표 1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

구분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부터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100만원 지급(업체별 최대 3억원 지급)
교육훈련보조금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100만원 지급(업체별 최대 3억원 지급)

자료 : http://www.investkorea.org/.

〈표 13〉 조세감면

감면요건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기타
A.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7년 감면 (5년:100%, 2년:50%)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15년간 면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5년간 면제
B.개별형 외투지역				
업종	최소외국인투자금액			
a) 제조업	USD 3천만			
b) 관광업	USD 2천만			
c) 물류 및 사회기반시설	USD 1천만			
d) R&D	USD 2백만			
C.단지형외투지역		5년 감면 (3년:100%, 2년:50%)		5년간 관세면제
a) 제조업	USD 1천만			
b) 물류업	USD 5백만			

자료 : http://www.investkorea.org/.

〈표 14〉 현금지원

구분	세부사항
지원기준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지원요건	A.외투 1천만$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B.외투 1천만$ 이상의 부품소재산업
	C.외투 5백만$ 이상 그리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0명 이상 고용 R&D 분야
용도	토지 매입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기반시설 설치비
평가기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낙후지역입지, 국내투자와 중복여부 등
지원금액	협상에 따라 외투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최소 5% 이상)

자료 : http://www.investkorea.org/.

〈표 15〉 충남도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종합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외국인 투자유치</th><th colspan="4">국내기업 유치</th><th rowspan="3">비고</th></tr>
<tr><th colspan="2">외국인투자지역(FIZ)</th><th rowspan="2">경제자유구역(FEZ)</th><th colspan="2">자유무역지역(FTZ)</th><th rowspan="2">수도권이전</th><th rowspan="2">국내복귀(U턴)</th><th rowspan="2">개성공업지구</th><th rowspan="2">신증설</th></tr>
<tr><th>단지형</th><th>개별형</th><th>산업단지</th><th>공항, 항만, 물류</th></tr>
<tr><td>근거</td><td colspan="2">• 외국인투자촉진법</td><td>•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td><td colspan="2">•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td><td>• 국가균형발전특별법</td><td>• 해외진출의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td><td>•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td><td>• 국가균형발전특별법</td><td></td></tr>
<tr><td>목적</td><td colspan="3">•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td><td>• 외자유치,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균형발전</td><td>•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td><td>• 외자유치, 국제물류기지 육성</td><td colspan="4">• 국내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td></tr>
<tr><td>위치</td><td>• 산업단지내</td><td>• 제한없음</td><td>• 국제공항, 항만 주변지역</td><td>• 항만, 공항주변지역, 산업단지</td><td>• 항만, 공항,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td><td colspan="5">• 산업단지 및 개별형</td></tr>
<tr><td>지정권자</td><td colspan="3">• 시도지사 지정 고시 (중앙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td><td>• 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d>• 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d colspan="5">-</td></tr>
<tr><td>대상</td><td>외투지분 30%↑
• 제조업 : 물류업 등
• 계약 후 5년내 잔대부지 가액이상 FDI 조건</td><td>외투기업 & FDI 조건
• 제조업 : 3천만$ ↑
• 관광업 : 2천만$ ↑
• 물류업 : 1천만$↑
• R&D : 2백만$ ↑
(3년↑석사10인)</td><td>• 외투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td><td>• 수출목적 내외국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td><td></td><td>•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30인 이상인 기업이 이전</td><td>• U턴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td><td>•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비수도권 투자</td><td>경제협력권, 주력, 지역집중유치업종일 경우이며
• (중견 · 중소) 3년이상, 고용 10인↑, 10억원 ↑
• (대기업) 3년 이상 300인↑</td><td></td></tr>
<tr><td>보조금
(현금지원)</td><td colspan="2">• 입지보조금 : 정상적 분양가의 50% 이내
• 시설보조금 : 필요한 총금액의 50% 이내
•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결정</td><td colspan="2">•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보조금 효과)</td><td colspan="2">지역구분 / 보조금유형 / 지원비율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일반 –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30%이내
일반 – 설비 설비투자금액의6%이내 설비투자금액의9%이내 설비투자금액의12%이내
수도권인접 –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9%이내
수도권인접 – 설비 설비투자금액의4%이내 설비투자금액의6%이내 설비투자금액의9%이내
지원우대 –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40%이내
지원우대 – 설비 설비투자금액의9%이내 설비투자금액의17%이내 설비투자금액의22%이내</td><td colspan="2">지역구분 / 지원비율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일반 설비투자금액의6%이내 9%이내 12%이내
수도권인접 설비투자금액의4%이내 6%이내 9%이내
지원우대 설비투자금액의9%이내 17%이내 22%이내
※ 신증설의 경우 입지보조 없음</td><td></td></tr>
<tr><td rowspan="2">임대료</td><td>지원</td><td colspan="2">• 부지가액 10/1,000수준(관리기본계획 명시)</td><td>• (임대료)부지가액 10/1,000수준(관리청 결정)
• (국공유재산)조성원가의 매각, 수의계약 가능</td><td>• 부지가액 10/1,000수준(산업부 협의 후 관리권자 결정)</td><td colspan="5">-</td></tr>
<tr><td>감면</td><td colspan="2">• 고도기술&1백만$↑: 100%
• 제조 2.5백만$&고용200명↑: 100%
• 제조 2.5백만$&고용150명↑: 90%
• 제조 2.5백만$&고용70명↑: 75%
• 제조 5백만$↑: 75%
(부품소재전단은 100%)
• 공유재산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
• 국공유지 경우 100% 감면</td><td>• 조례등에 따라 관리청 결정(50%~100%)</td><td>• 외투&1천만$↑, 외투30%&1백만$: 100%
• 고도기술&5억만$↑: 100%</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지원분담</td><td colspan="2">• 수도권 : 통상 국비 30% 지원(국 30, 지방 70)
• 비수도권 : 통상 국비 60% 지원(국 60, 지방 40)</td><td>• 분담률 미결정</td><td>• 지정단계에서 부지 매입분담률 결정</td><td colspan="5">• (일반)국 65, 지방비 35 • (수도권인접) 국 45 지방비 55 • (지원우대) 국 75 지방비 25</td></tr>
<tr><td rowspan="2">조세
감면</td><td>조건</td><td>• 제조업 : 1천만$↑
• 물류업 : 5백만$↑</td><td>위 지정요건과 동일</td><td>• 제조업 : 3천만$↑
• 관광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td><td>• 제조업 : 1천만$↑
• 물류업 : 5백만$↑</td><td rowspan="2">• 법인세 : 6년(100%), 이후 3년(50%)
• 취득세 : 면제
• 재산세 : 5년(100%), 이후 3년(50%)
• 취득세 : 면제
(15년도까지 산단 입주계약 기업)</td><td rowspan="2">• 법인세 : 5년(100%), 이후 2년(50%)
• 소득세 : 5년(100%), 이후 2년(50%)
• 취득세 : 면제
(15년도까지 산단 입주계약 기업)</td><td rowspan="2">• 취득세 · 재산세 : 면제
(15년도까지 산단 입주계약 기업)</td><td rowspan="2">• 취득세 · 재산세 : 면제
(15년도까지 산단 입주계약 기업)</td><td rowspan="2"></td></tr>
<tr><td>대상</td><td>• 법인세, 소득세 : 5년
(3년100%+2년50%)
• 지방세 : 15년 범위 내 100%</td><td>• 법인세, 소득세 : 7년
(5년100%+2년50%)
• 지방세 : 15년 범위 내 100%</td><td>• 법인세, 소득세 : 5년(100%), 이후 2년(50%)
• 지방세 : 15년 범위 내</td><td>• (제조,물류)법인세, 소득세 : 3년(100%), 이후 2년(50%)
• 지방세 : 15년 범위 내 범위 내 조례로 조정</td></tr>
<tr><td colspan="2">관세감면</td><td colspan="3">• 자본재 5년간 면제</td><td>• 자본재 5년간 면제</td><td>• 관세면제 또는 환급</td><td>-</td><td>• (중소) 선정일로부터 자본재 5년</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인력지원</td><td colspan="2">• 고용보조금 : 20인↑, 1인당 월10~100만원(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 20↑, 1인당 월10~100만원(기업당 최대 3억원/6개월)</td><td></td><td></td><td></td><td></td><td>• 고용 1명당 최대 1080만원(1년간)
• 생산관리자 (E-7) 지원
• 비전문취업(E-9) 지원</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자금융자</td><td colspan="2"></td><td></td><td></td><td></td><td>•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등(도자체)</td><td>•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최대70억원)
• R&D지원 : 단일 과제별 최고 1.5억원</td><td></td><td>•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등(도자체)</td><td></td></tr>
</table>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5).

3 정책적 시사점

◉ 충남도를 포함한 광역 지자체들의 기업유치제도와 관련 인센티브를 살펴본 결과,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첫째, 모든 지자체들은 관련법령 및 자체조례에 의거, 국내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구분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과 해당 지자체의 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항을 인센티브로 제공함
- 반면, 국내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자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항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음

◉ 둘째, 국내 기업유치 시 제공되는 대부분의 인센티브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의거, 실링제 형태로 운용됨

- 따라서 지자체별 유치여건에 따라 인센티브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함
- 실례로 충남의 경우,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비중이 높아 고용 및 교육 ·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셋째,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공되는 인센티브 분야와 분야별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은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임

- 실제로 국내기업 투자유치 시 제공되는 세제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보조, 고용 및 교육 · 훈련보조, 행정지원 등은 공통사항임
- 또한 비수도권 대상 수도권 기업, 국내 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이전지원범위나 지원금액은 모두 동일함
- 한편, 외국인 투자지원의 경우에도 특별지원, 유공자 포상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동소이함
- 다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특별히 반영되는 경우, 인센티브의 제공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제3장 기업유치사례 참조 要)

03 지자체 기업유치 사례

1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기업유치 사례

▌전라북도 : LS전선 유치

◉ 전라북도는 다각적인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LS전선을 유치함

- 경기 군포시에 있던 LS전선을 완주군으로 유치한 것은 13년간 공들인 결과임

◉ 전북도지사는 LS전선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기업을 방문하여 투자인센티브를 직접 설명하는 등 발로 뛰는 투자유치 행정을 보였으며 당시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음

- 당시 투자업체에 3~5억원을 제공하던 다른 시도와 달리 LS전선에 용지대금 차액 중 454억원을 보조하고 이전보조금 150억원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하여 유치에 성공

- 이 외에도 노조대표를 초정해 주거와 교육문제에 대한 지원도 약속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경기도 : LG필립스 파주 LCD공장 유치

◉ 경기도는 LG필립스 파주 LCD공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은 전개

- 경기도는 산업부 등 15개 정부유관기관과 '정부합동지원단' 을 구성하여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공단의 조기 확보를 위해 도정을 집중

◉ 실제로 개발계획 수립에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행정절차를 1년으로 단축

- 구체적으로 공장설립 인·허가권을 시·군에 대폭 이양하였으며, 공사기간

을 단축하기 위해 '문화재 발굴대책반' 과 '분묘 대책반' 까지 운영함

▌강원도 : LS전선 강원 동해공장 유치

◉ 강원도는 LS전선 강원 동해공장 유치를 위해 투자지원 실무협약을 맺고 공장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여줌

- 토지보상 → 건축허가 및 공장설립 승인 →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3개월로 대폭 축소함

◉ 이 외에도 파일공사비 지원을 위해 188억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보조금을 투입함

- 또한 기업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사 및 연수원 시설을 갖춘 LS타운을 동해시에 조성할 계획임

▌충남도 : OCC社 유치

◉ 충남도는 OCC社 유치를 위해 범정부차원 합동프로젝트팀 구성과 건물임대료 무상지원을 실시

- 동 프로젝트팀은 충남도, 당진군(당시), 산업부, 해수부, 한전, 현대제철, KOTRA 등 12개 기관 및 기업체로 구성하여 합동대책회의 15회, 중앙정부 건의 8회 등 다양한 유치노력을 전개

◉ 이외에도 조례개정을 통해 건물 임대료를 지원하는 파격적 조치 단행

- 당시 도 조례상 임대료 보조는 가능했으나,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었던 상황

- 이에 충남도는 자치단체 최초로 도 조례개정을 통해 10년간 건물임대료의 무상지원을 단행

▌신안군 : 엘도라도 리조트 유치

◉ 엘도라도 리조트 유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에 나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관광개발 사례

- 투자유치가 성공한 핵심요인으로는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행정적 지원이 손꼽힘

◉ 7만 6,817㎡에 해당하는 농지를 관광·레져·휴양시설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농지의 용도를 전환하면서도 농지전용부담금을 완전 면제해줌

- 전남도와 신안군은 증도 일대를 한계농공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등 등 시설을 유치하려는 뚜렷한 목표와 의지를 천명

◉ 이 외에도 신안군은 직접적인 행정지원을 하면서 업무처리 역시 간소화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의 민원처리를 신속하면서도 빠르게 처리해줌

- 또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민·관 협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0% 분양률을 기록

▌화순군 : 녹십자 백신공장 유치

◉ 화순군은 녹십자 백신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용지 지원과 다양한 행정적 지원 노력을 다함

- 특히, 공장용지 제공을 위해 군비 77억원을 투입해 2만평의 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함

◉ 또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군정발전 기획단을 신설하고 투자유치 및 기업전담을 위해 관련조직규모를 25명으로 확대

- 기업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각각 '1인 1기업제도' 와 '기업후견인 제도를' 운영함

- 이 외에도 기업유치 포상금제를 마련하여 투자유치액, 고용인원, 업종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조례로 마련함

▌군산시 : 현대중공업 유치

◉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해당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

- 군산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까지 입지보조 100억,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 각각 2억원씩 총 104억원을 지원

- 현대중공업의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우 채권단과 LG그룹을 설득하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유치 전담부서 신설, 기업유치 전문가 채용,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제도를 시행함

- 특히, 기업유치 관련 11개 기관과 연계하여 기업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처리기한을 단축함

▌논산시 : 동양강철 유치

◉ 2014년 대한상공회의소 자체 보도자료에 따르면 논산시는 기업환경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전국 1위를 차지함

- 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논산시의 1등 비결은 '기업유치중심 지역발전 전략' 에 있음

◉ 실제로 동양강철을 유치하기 위해 논산시는 충남도 및 농식품부와 연계하여 개발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함

-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 부서간 상충되는 복합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이외에도 최근 2년간 30여개 기업을 방문하여 저렴한 분양가, 맞춤식 행정서비스 등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기업유치 마케팅을 전개함

2 정책적 시사점

◉ 지자체들의 기업투자 유치성공 사례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를 가릴 것 없이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갖추는 것이 공통된 사항임

- 둘째, 기업유치를 전담할 행정조직을 통해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기업애로 해소 등 다양한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임

- 셋째, 기업유치와 관련한 정부부처 및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자유치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는 점임

- 넷째, 기업이 필요로 한다면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기존 인센티브를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임

- 끝으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직접적인 기업유치 활동 이외에도 주거, 교육 등의 정주지원도 기업유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표 16〉 기업유치 사례 및 시사점

구 분		인센티브(성공요인)	시사점
광역	전북	용지 및 이전보조금, 주거 및 교육지원	기존 제도를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투자유치 의지 및 실행력 정부부처 및 투자유치 관련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경기	행정절차 간소화,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강원	투자지원 실무협약, 인허가 절차축소, 투자보조금 지원	
	충남	합동프로젝트팀 구성, 건물임대료 지원(조례개정)	
기초	신안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민원처리 간소화	기존 제도를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다양한 기업유치 마케팅 시행 양호한 기업경영환경 조성
	화순	산업용지지원, 군정발전 기획단 신설, 기업유치 포상금제 시행, 기업후견인제도	
	군산	기업 맞춤형 지원, 밀착 행정서비스 제공, 투자유치 추진체계 구축	
	논산	양호한 기업환경 조성, 개발보조금 지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기업유치 마케팅	

자료 : 기존 문헌자료를 인용하여 필자정리.

04 기업유치 유관기관 현황

1 기업유치 유관기관별 주요 지원내용

◉ KOTRA는 유망 외국인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프로젝트 지원, 외투기업 사후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광범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활동 담당
  - 특히, Invest KOREA(IK)는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신고에서 한국내 사업개시, 기업활동 및 생활관련 애로해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은 COMIS를 통해 지방투자와 관련한 실질적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모색
  - 지방투자정보 안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①지자체별 투자환경/지원제도/특화업종 등 소개, ②지방투자정보 및 각종투자혜택 소개, ③지방이전 투자시 보조금 지원제도 및 세제혜택 소개, ④산업단지 분양정보, 법령정보 등 각종 자료소개, ⑤지방투자 성공사례 및 지역별 행사정보/뉴스레터/공지사항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능력개발, 자격검정, 외국인 고용지원, 숙련기술 진흥 등과 관련한 역할을 담당

◉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
  - 금융, 인력, 창업/벤처, 판로/수출, 컨설팅, 그리고 특히 기업현장애로사항을 발굴을 위해 현장기동반 운영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투자 활성화에 간접적 기여 가능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동 기금은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R&D · 지식재산 · 긴급경영안정 · 스타벤처기업특례 보증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 가능함

◉ 충남신용보증재단

- 충남 및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자금 · 재해중소기업 · 청년전용창업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 가능함

◉ 충남테크노파크

-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중개기능, 기술혁신 클러스터, 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창업보육, 기술개발, 교육훈련, 장비구축, 정보교류, 시험생산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에 간접적 기여 가능

◉ 충남경제진흥원

- 자금, 마케팅, 경영, 기술정보, 국내외 해외시장개척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 가능

◉ 충남도 투자입지과

- 투자입지과는 충남도의 국내 · 외 기업 투자유치 총괄부서로 투자정책, 외자유치, 기업유치 등의 핵심 업무를 수행함

- 투자정책 관련 주요업무는 ①투자유치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 총괄, ②도 · 중앙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③투자유치기획 및 시책의 수립 · 추진, ④투자유치 대외홍보, ⑤투자유치 활동지원 등임

- 기업유치 관련 주요업무는 ①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②기업유치 홍보, ③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등임

- 외자유치 관련 주요업무는 ①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원, ②외투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관리, ③외투기업 공장설립 및 입주지원, ④

외국인 생활 및 인프라 시설 개선, ⑤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등 유치활동 등임

〈표 17〉 기업유치 관련기관 및 지원사항

구 분	지원부문 및 유형	주요지원내용
KOTRA	정보제공, 사후관리, 민원처리	정보제공 서비스(조사/컨설팅), 잠재투자가 및 투자프로젝트지원, 외국인기업창업지원, 투자옴부즈만, 외국기업고충처리, 직접민원서비스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및 입지관련 정보제공	산업입지, 보조금지원제도, 공장설립 등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력양성 및 고용지원	근로자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외국인 고용지원 서비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생산 및 경영관련 각종 서비스	금융, 인력, 창업/벤처, 기술/R&D, 판로/수출, 컨설팅 등
기술보증기금	기술관련 금융서비스	중소기업 R&D, 기술창업, 기술금융 지원 등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 재해중수기업 · 장애인 기업 · 협동조합 특례보증 등
충남테크노파크	첨단산업육성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 인력양성, 장비구축활용, 기술이전 등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 및 기업애로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마케팅, 자금, 창업, 일자리 지원 등
충남도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지원 전반	투자정책, 외자유치, 기업유치 관련 모든 행 · 재정적 지원

자료 : 각 기관별 홈페이지 참조.

2 정책적 시사점

◉ 국내외 기업유치와 관련한 주요 유관기관 현황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공주시 차원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내외 기업유치와 관련한 유관기관은 직접적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유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전자의 대표적인 기관은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도 투자유치과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대전충남 지방중기청, 기술보증기금, 충남신보, 충남TP, 충남경제진흥원 등이 이에 해당함

- 이 중 KOTRA는 외국인 투자기업만을 대상으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나머지 기관은 대부분 국내기업에 집중하되,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 둘째, KOTRA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투자기업을 직접 발굴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업이 원활한 초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투자 후 기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관련지원을 수행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초기투자단계에서는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후에는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교육훈련, 금융, 컨설팅, R&D, 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

- 다만, 주목할 점은 업무 특성상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도 투자유치과는 투자를 고려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동향정보를 일정 수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이들 기관과의 꾸준한 접촉을 통해 공주시에서 유치가능한 업종 및 기업의 리스트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투자유치 유관기관은 예외 없이 관련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거, 해당기관별로 고유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상호 원활한 연계 없이 분절화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이들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이고도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공주시 기업유치 인프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공주시의 취약한 행·재정력만으로는 원활한 기업유치가 어려우므로 유치 대상기업의 투자정보를 얻거나 각종 지원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05 공주시 기업유치 실태 및 SWOT분석

1 공주시 기업유치 제도 및 인센티브

◉ 공주시는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시 '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

- 동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주시 조례상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로 구분됨

- 국내기업 대상 투자 인센티브로는 입지보조, 투자보조,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 기반시설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함
- 외국인 대상으로는 입지보조, 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 시설보조 지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충남도의 국내외기업 투자인센티브와 연계하여 공주시 차원의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주시는 일반지역으로 기업규모별 지원비율에 따른 총 지원금액의 35%범위 내에서 도비와 시비를 분담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입지 및 투자보조지원이 가능함

- 신·증설 기업을 유치할 경우, 기업규모별 지원비율에 따른 총 지원금액의 35%범위 내에서 도비와 시비를 분담하여 투자보조지원만 가능함

- 이상의 입지 및 투자보조 지원 외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관세

감면, 인력지원, 자금융자 지원이 가능함(〈표 9〉 참조)

-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입지 및 시설보조,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신증설 투자·고용 및 교육훈련·현금보조 지원이 가능함 (〈표 15〉 참조)

〈표 18〉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인센티브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국내기업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 범위 내) 투자보조금(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 범위 내)
	사업지원서비스업	입지보조금(1년분 건물임자료의 50% 범위 내) 투자보조금(시설장비 설치비의 30% 범위 내) 고용보조금(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 경우, 6개월 범위 내 1인당 월 50만원 이하) 교육훈련보조금(20명 이상 신규고용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 이하)
	대규모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총액은 150억원까지 지원가능
	신규투자기업	투자보조금(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
	기반시설지원	기반시설비의 50% 범위 내
	조세 감면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지원	공유재산 활용 및 매각
외국인 투자	입지보조금	임대료 차액에 대한 지원, 분양가 지원
	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 경우, 6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하
	교육훈련보조금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 경우, 6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하
	시설보조금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내

자료 :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2 공주시 기업유치 실적

◉ 공주관내 유치 업체수는 국내 경기침체 지속 및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07년 34개 업체에서 2014년 23개 업체로 동 기간 중 연평균 5.43%씩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동 기간 중 충남의 연평균 감소율 6.23%를 하회하는 수준임

◉ 한편, 수도권 기업 유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으로 공주시의 경우 여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편임

- 실제로 동 기간 중 충남도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2007년 382개소에서 2014년 32개소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임

〈표 19〉 공주시 기업유치 실적(2007~2014)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업체수	수도권 이전	업체수	수도권 이전	업체수	수도권 이전	업체수	수도권 이전	업체수	수도권 이전	업체수	수도권 이전	업체수	수도권 이전	업체수	수도권 이전	업체수
계	1,004	382	855	368	817	286	683	200	729	92	596	69	671	38	640	32	-6.23
천안	199	49	189	60	216	56	161	60	200	8	180	7	252	1	130		-5.90
공주	**34**	**1**	**30**	**6**	**24**	**5**	**35**	**-**	**33**	**3**	**31**	**4**	**13**	**5**	**23**	**2**	**-5.43**
보령	22	8	57	32	17	4	13	2	21	0	27	6	16	3	25	6	1.84
아산	168	31	127	58	126	48	140	42	183	9	153	5	177	-	166	3	-0.17
서산	23	9	70	35	30	13	48	35	27	13	25	4	31	13	29	6	3.37
논산	60	3	41	6	46	3	44	-	40	1	6	-	11	-	50	3	-2.57
계룡	7	1	9	1	1	-	2	-	6	0	5	-	2	-	2	-	-16.39
당진	267	222	160	114	194	123	94	47	61	41	67	39	49	14	88	-	-14.66
금산	68	3	35	2	47	-	57	1	60	0	46	-	68	-	52	-	-3.76
연기*	26	6	19	0	32	4	29	7	34	10	-	-	-	-	-	-	-
부여	10	4	5	0	8	1	19	4	8	1	5	-	5	1	5	-	-9.43
서천	14	1	14	3	9	-	10	-	14	0	13	1	12	-	6	-	-11.40
청양	11	2	4	2	5	-	4	-	3	1	3	1	3	-	7	1	-6.25
홍성	23	7	25	11	13	3	17	1	23	2	15	1	13	-	24	5	0.61
예산	66	34	61	38	43	26	5	-	12	3	14	1	14	1	25	6	-12.95
태안	6	1	9	0	6	-	5	1	4	0	6	-	5	-	8	-	4.20

* 연기군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으로 인해 2012년부터 충남도 기업유치실적에서 제외됨.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5).

3 공주시 기업유치 활동 실태

◉ 공주시는 민선 6기 들어 관내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조례개정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유치 및 지원기반을 구축함

◉ 기업유치촉진위원회 및 기업유치 촉진본부 설치

- 공주시 기업투자촉진위원회는 '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4조에 의거, ①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정책자문, ②기업 및 관련기관의 단체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③국내외 투자기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관한 심의, ④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자문 및 심의 역할 담당

- 관련하여 공주시는 민선6기 들어, 기업유치를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고 기업유치촉진본부 구성, 기업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투자설명회 개최 등 행정력을 결집

- 또한 '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22조에 의거, 수도권 기업 투자정보 파악 및 투자유치 활동, 기업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처리 지원을 위해 기업유치촉진본부로 설치할 수 있음(조문 신설 2014.12.15.)

〈그림3〉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 정례회의

자료 : http://www.gongju.go.kr/.

◉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 운영

- '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21조에 의거,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민원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로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 '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20조에 의거, 공주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개정 2014.12.15.)

◉ 기업유치 전담 공무원(일반 임기제) 채용

- 기업 및 관련기관 방문 등을 통해 우량기업 유치, 기업유치 전략개발 및 투자수요 발굴,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할 전담 공무원 채용 예정

◉ 공주시정발전연구단 조직·운영

- 민선 6기 들어 공주시는 시정발전연구단을 새롭게 신설하여 공주발전을 위한 기업유치방안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전개

- 구체적으로 시정발전연구단은 최근 ○○타이어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해당 기업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향후 유치실무심의회를 개최할 예정

〈그림4〉 타이어 테스트 엔지니어링센터(PG)

자료 : 공주시정발전연구단 내부자료.

◉ 규제개혁추진 TF 설치

- 행정전반에 걸친 규제를 대상으로 하되, 기업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규제개혁포털과 연계한 규제개혁 추진 TF 구성

- 지방투자보조금 관련 고시개정 및 기업유치 투자기반 강화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을 기 추진

◉ 공주시 취업정보 정보센터 운영

- 구인을 희망하는 투자유치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매주 1회 정기적 방문을 통해 인력채용 정보확보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전문 직업상담사를 상주시켜 구직자 대상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일자를 제공하는 한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동행면접 등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

◉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 충남도와 각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자금 및 정책자금, 우수 기업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확충,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관내 중소기업 50명 대상)

〈표 20〉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활동

구 분		주 요 내 용
직접적인 활동 (유치기반)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	투자유치기본계획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 기업 및 관련기관 단체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국내외 투자기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심의
	기업유치 촉진본부 설치	수도권 기업 투자정보 파악 및 투자유치 활동 기업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처리지원 기타 행·재정적 지원사항
	기업투자 촉진보조금 확대	관내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기업투자 설명회 개최	직접 찾아 가는 투자설명회 개최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	기업 민원 실무담자로 구성
	기업유치 포상금	투자유치 공로자 대상 포상금 시상
	기업유치 전담공무원 채용	우량기업 유치, 기업유치 전략개발 및 투자수요 발굴, 홍보활동 등
	공주시정발전연구단	기업유치 관련연구 및 유치활동 전개
간접적인 활동 (지원기반)	규제개혁 추진 TF 설치	기업 경영 및 지자체 관련 불합리한 규제 및 해로 해소 포함
	공주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관내 입주기업과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지역인재에 대한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관내 중소기업 대표 50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자료 :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공주시 홈페이지.

4 SWOT 분석 및 향후과제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주시의 기업유치 여건 및 역량에 대한 SWOT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주시의 기업유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2)]

◉ 강점요인으로는 첫째, 민선 6기 들어, 현 공주시장의 기업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천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재정적 기반구축을 들 수 있음

- 둘째, 호남 고속철도 개통,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 물류여건이 크게 개선됨

- 셋째, 수도권과 및 주요 소비도시인 대전과의 인접성이 양호하여 시장수요를 중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용이함

- 끝으로, 지역 내 공주대학교, 공주영상대 등 다수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인력수급이 용이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2) 기업은 창업 및 공장설립 등 신규투자를 위한 입지결정 시 생산요소, 물리적 요소, 정책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SWOT분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공주시의 생산 및 물리적 요소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여건 및 정책요소를 중심으로 동 분석을 실시함

〈표 21〉 기업투자환경의 구성요소

요소조건	기업환경	구성요인	세부항목
생산요소 조건	요소시장 및 경영환경	토지	지가, 임대료, 생산가능지
		노동	임금, 교육훈련비용
		자본	조달비용
		기술	구득비용
물리적 요소 조건	정주환경	주거	주택수 및 보급률
		문화·복지	관련시설
		의료	병원
		교육	초중고 및 대학
	산업집적 및 지원산업 환경	산업집적도	전후방 연관 및 협력업체 존재
		생산자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지원정도
	인프라 환경	물적인프라	교통망, 물류시설, 유틸리티
		지식인프라	대학, 연구소
정책요소 조건	정책 및 지원환경	지원사업	정책자금, 기업지원서비스
		행·재정적 인센티브	조례, 투자인센티브

자료 : 충남 기업환경 분석(2011).

〈그림 5〉 공주시 기업유치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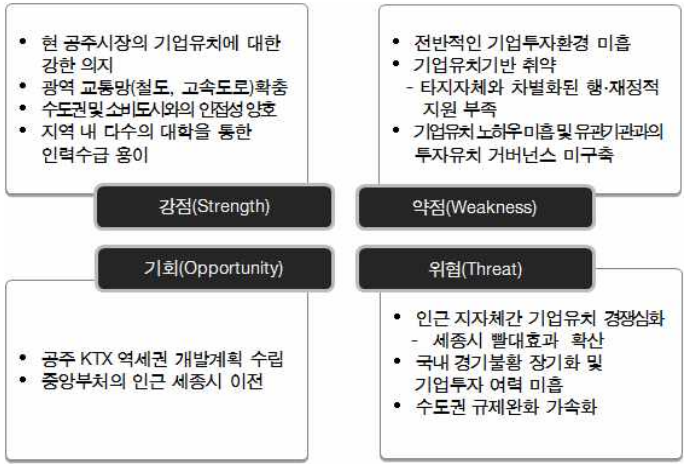

◉ 약점요인으로는 첫째, 공주시는 역사도시라는 지역정체성이 강하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기업투자환경이 미흡함

- 둘째, 시의 기업유치 의지와는 별개로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행·재정적 지원이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한계 노정

- 끝으로, 충남도내 대부분의 시군과 마찬가지로 기업유치 노하우가 부족하며, 이는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계 미흡으로 나타남

◉ 기회요인으로는 첫째, 호남고속철 개통에 따른 공주 KTX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충남도 차원의 광역계획 수립이 진행 중으로 향후 다양한 도시 서비스 기반확충이 기대됨에 따라 이를 기업유치의 계기로 삼아야함

- 둘째, 중앙부처 특히, 산업부, 국토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조체계 구축이 용이할 수 있음

◉ 마지막 위협요인으로는 첫째, 국내경기 침체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기업투자 여력상실은 기업유치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함

- 둘째,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조치가 공주시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나 이는 최소한 긍정적 요인은 아님

- 끝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공주시의 기업유치 경쟁상대이며, 이러한 유치경쟁이 제로섬 게임(zero-sum)임을 감안하면, 특히 인근 세종시나 논산시와의 유치경쟁은 격화될 전망임

- 관련하여 세종시는 현재, 급속한 성장과정 중에 있는 도시로 강력한 빨대효과(straw effect)를 통해 주변지역 특히, 공주시의 잠재역량을 급속히 위축시키는 실정임

- 따라서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나 충남도를 대상으로 지역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국내외 기업유치와 관련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정부 건의가 요구됨

공주시 기업유치 방안 06

1 공주시 기업유치 전략 및 프로세스 확립

◉ 공주시 기업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유치전략 수립

- 기업은 투자 시 대상지역의 기업환경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함
- 구체적으로 〈표 22〉에 기술한 대로 기업은 신규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생산요소 조건(요소시장 및 경영환경), 물리적 요소조건(정주환경, 산업집적 및 지원산업 수준, 인프라), 정책요소 조건(정책 및 지원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 따라서 위 3가지 요소조건의 전반적인 수준제고가 기업유치성과와 직결되므로 공주시 기업유치방안은 이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함
-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시간 및 비용 등의 제약으로 정책요소 조건만을 고려한 제한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가짐
- 따라서 위 3가지 요소별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공주시만의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및 투자유치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주시 기업유치 프로세스 확립

- 일반적으로 투자유치 단계는 투자유치 사전단계 → 투자유치 진행단계 → 투자유치 후속단계로 구분됨
- 각 단계별로 기업유치 프로세스상 공주시에서 추진해야할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KOTRA, 산단공, 충남도 투자입지과 등의 유관기관과 출향기업인 등을 통해 신규창업 및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DB구축
  - ② 공주시 기업투자 유치촉진위회 및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Target을 설정
  - ③ Target기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투자의향조사를 실시하고 LOI 체결
  - ④ LOI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방문 및 대면논의를 통해 MOU체결
  - ⑤ 기업의 투자조건에 부합하는 신속한 사후조치(행·재정적 지원 등) 추진

〈그림 6〉 공주시 기업보쌈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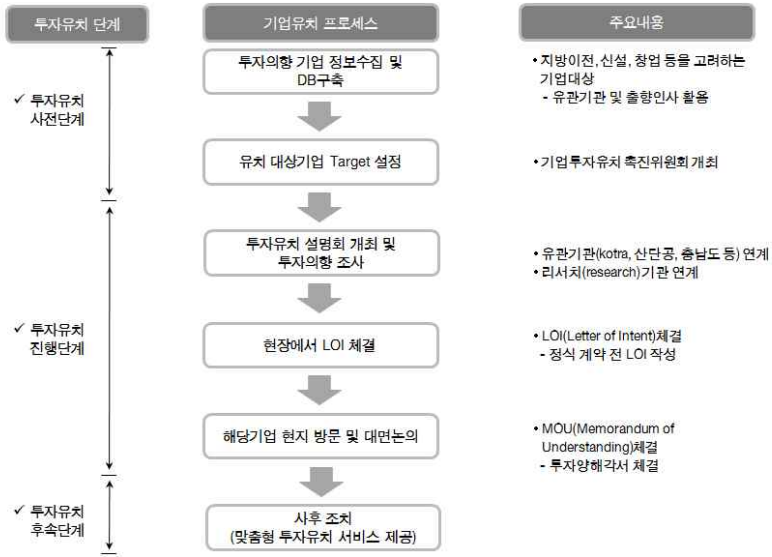

2 행정적 지원체계 개편 및 확충

◉ 기업유치 홍보대사 위촉 · 운영

- 관내 대기업 CEO 및 임원진 등을 투자유치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기업투자 관련정보 구득 및 자문을 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공주시 투자환경의 대외적 홍보역할을 담당토록 함

◉ 국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및 추진체계 확립

- 기업유치에서부터 정착에 이르는 일련의 행정적 지원사항을 특정부서에서 모두 담당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 존재

- 따라서 투자유치 상담 → 공장설립 → 정착에 이르기까지 행정처리 간소화 및 유치기업의 정착을 위한 투자유치 추진체계 재정비

- 구체적으로 투자유치 관련 담당부서인 기업경제과, 시정발전연구단,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팀, 규제개혁 추진 T/F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원활한 투자유치 협력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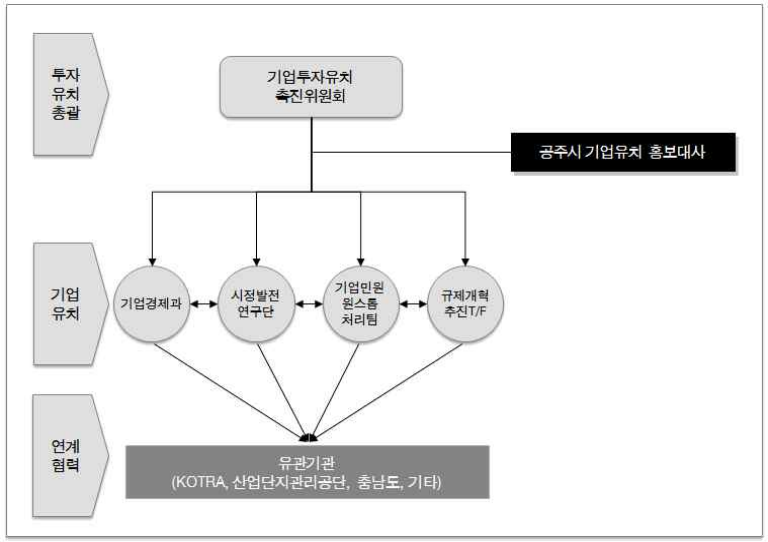

◉ 투자유치 자문관 채용

- 투자유치는 풍부한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현재, 공주시의 행정인력만으로는 관련업무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투자유치와 관련한 풍부한 노하우(know-how) 및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을 자문관으로 2~3명을 채용하여 투자유치 전담인력으로 활용

- 투자유치 자문관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투자유치 실적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의 인센티브(포상금 등)를 제공해야 실질적인 유치활동이 가능함

◉ 투자유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현행, 공주시 투자유치 관련 업무 및 지원 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부서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관련정보 제공채널이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공수준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이 하나의 창구(single-window)를 통해 투자유치 상담에서부터 공장설립, 나아가 정착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관련하여 투자유치 전담인력(PM)으로 투자유치자문관을 두어 투자상담 → 준비 → 인허가 → 사후관리(정착포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토록 함

- 특히, 투자유치 관련 정보제공 채널은 시 홈페이지로 일원화하되, 제공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으로 ①기업지원(금융, 세제, 기술, 인력, 창업/벤처, 판로/수출, 컨설팅/특허/인증 분야), ②경영자문/컨설팅(경영, 인사, 노무, 기술, 생산, 자금, 재무, 법률, 마케팅 분야), ③취업/채용(채용, 인력양성, 교육훈련 분야), ④기업민원 및 애로(공장설립, 자금, 인프라, 판로/수출, 인력/교육, 기술/인증, 창업/벤처 분야), ⑤입지(국가/일반/농공단지 분야 및 개별입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토록 함

- 아울러 정보제공 주체인 관련유관기관으로 즉시 접속 가능하도록 링크시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함

3 재정적 지원인센티브 신설 및 확대

◉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공주시 기업유치기금 조성
- 향후 5년간 매년 20억씩 '투자유치 보쌈기금(가칭)' 100억원을 조성하고 동 기금의 용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금으로 활용

- 아울러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공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 要

◉ 기존 일반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전환하여 입지 및 투자지원비율 확대
- 현재, 충남도는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 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입지 및 투자보조 지원 시 낙후지역의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이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있음

- 관련하여 공주시는 일반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련 지원을 받고 있으나 세종시의 빨대효과로 인해 지역 공동화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충남도에 강력 건의하여 지원우대지역으로 재조정 받아 인센티브 지원비율을 제고해야함

4 기업투자 유치활동 강화

◉ 공주시 출향기업 파악 및 본사방문 투자상담 정례화
- 전국 각지에 산재한 공주시 출향기업을 대상으로 공주시장을 대동하여 본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투자상담을 정례화함

- Target기업 중 투자의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본사방문을 통한 투자상담 확대실시

◉ 투자유치 팸 투어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출향기업 및 Target기업, 투자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팸투어' 를 실시함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지역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동시에 투자상담을 병행추진

◉ 투자유치 대상기업 투자의향 및 인센티브 수요조사 실시
- 유관기관, 출향기업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득한 투자유치 Target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유치 팸투어를 개최하고 참여기업의 투자의향 및 투자 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함

-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지원수요에 대한 재원은 '투자유치 보쌈기금(가칭)' 을 활용토록 함

◉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적 홍보 마케팅 추진
- 시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신문, 옥외광고, 홍보 팜플렛, 홍보 동영상,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공주시가 투자 적격지임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추진

- 특히, 홍보 팜플렛과 홍보 동영상은 IR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시 활용

◆ 참 고 자 료 ◆

강원발전연구원, 2010, 강원도의 초경량 소재부품기업 유치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12, 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사례분석과 경남의 정책방향.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공주시정발전연구단 내부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14, 2014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

부산발전연구원, 2011, 성장정체의 탈출구, 기업유치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4,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2013).

신동호, 2011, 충남기업환경분석, 현안과제.

http://kosis.kr/

http://www.chungnam.net/.

http://www.gongju.go.kr/.

http://www.investkorea.org

http://www.law.go.kr/

https://www.google.co.kr/